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9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이재정·박홍배·백혜련

임호선 · 복기왕 · 박희승

김한규 · 강훈식 · 강유정

장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, 포화지방,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(낮음), 황색(보통), 적색(높음)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.

이러한 '영양성분의 함량 색상·모양 표시제도(신호등표시제)'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. 예를 들어 치즈는,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.

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 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,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(안 제12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, 보통,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, 황색,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(이하 "색상·모양 표시"라한다)"를 "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(이하 "영양성분 앞면 표시"라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색상·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"를 "영양성분 앞면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색상·모양"을 "영양성분 앞면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・	제12조(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・
모양 표시) ① 식품의약품안전	모양 표시) ①
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	
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	
있는 총지방, 포화지방, 당(糖),	
나트륨 등 <u>영양성분의 함량에</u>	<u>영양성분</u>
따라 높음, 보통, 낮음 등의 등	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
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	기 쉽게 앞면에 표시(이하 "영
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	양성분 앞면 표시"라 한다)
색, 황색, 적색 등의 색상과 원	
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(이하	
<u>"색상·모양 표시"라 한다)</u> 하도	
록 식품 제조・가공・수입업자	
에게 권고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	②
전처장이 색상・모양 표시를	<u>영양성분 앞면 표시를</u>
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	<u>하게 하는 경우</u>
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	
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	
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	
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	
여야 한다.	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	③

•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	<u> 성분 앞면</u>
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	
다.	